



2026 이공분야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글로벌랩 신규과제 신청요강

▶ 2026년도 이공분야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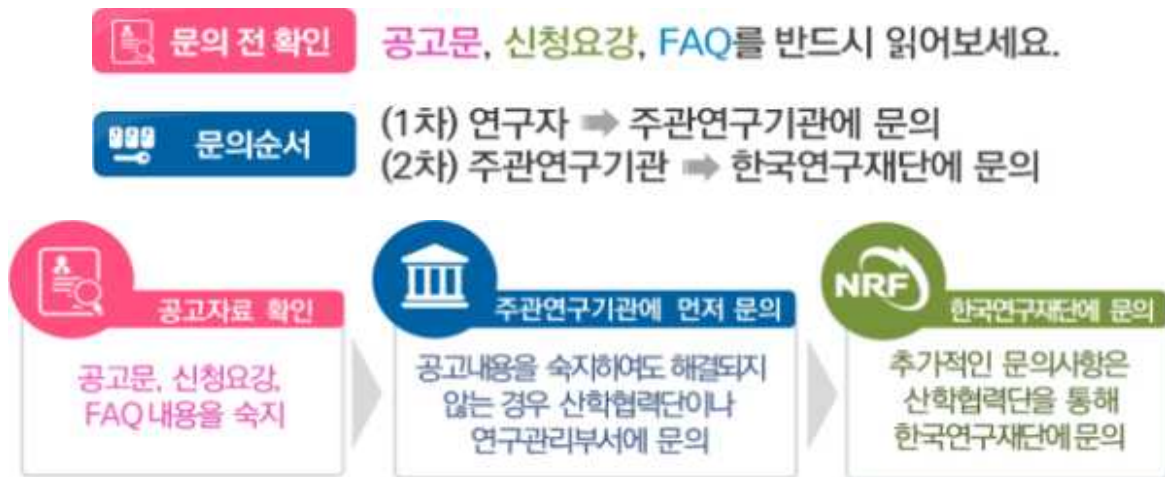
2026. 2.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 FAQ) 확인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신청 및 접수 시스템 관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 IRIS 콜센터 ☎ 1877-2041, ☎ 042-862-1500
 - IRIS Q&A :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 IRIS시스템 장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 및 평가 관련 : 한국연구재단 문의

- 사업 관련: 사업 내용, 지원자격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619, 6622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 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글로벌랩	6553	6534/6538	6055	6543	6564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2026년도 글로벌랩 신규과제 신청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2026.04.07.(화) 09:00 ~ 2026.04.14.(화) 14:00:00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2026.04.07.(화) 09:00 ~ 2026.04.14.(화) 16: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 신청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신청 기간 내 미접수시 별도 구제 불가

- ② 2026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③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글로벌랩의 경우 대학별 신청 과제 수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신학협력단 또는 연구관리부서)에 문의하시고 추천이 협의된 연구소만 신청 가능합니다.

- ※ 대학부설연구소는 KCI(<https://www.kci.go.kr>)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 ※ KCI에 등록된 대학부설연구소는 관련 정보(연구소명, 연구소장, 성과 등)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평가기간 동안 공개 제한 해제 요망
(KCI등록정보(성과 및 활동 실적 등) 평가시 활용, 연구소명과 과제명 일치 必)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추천은 신청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절차로 같음

【 연구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 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KRI 연구자정보 데이터의 정보이관 동의 후 최초 1회만 이관되므로, 이관 이후의 연구자 정보는 IRIS내 NRI를 통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매뉴얼1-2. 03-2참고]

※ KRI 연구자정보 이관 동의 후 익일에 NRI에 KRI정보가 반영됩니다. 연구자정보 이관 및 NRI 연구자정보 수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과제 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OO대학교>로 신청
요망

- <OO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OO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OO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OO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OO대학교) 및 산학협력단(OO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OO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OO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OO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I 사업 개요

1 지원근거 및 사업목적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 사업목적
 - 대학 연구소를 지역의 연구거점으로 육성하여 우수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학문후속세대 등 인재 양성

2 지원내용 및 선정규모

구분	글로벌	
	거점형	컨소시엄형
사업유형	집단연구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소속 KCI 등록 이공분야 대학부설 연구소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소속 KCI 등록 이공분야 대학부설 연구소간 컨소시엄*
선정규모	8개 내외 (※비수도권 60% 이상 선정)	2개 내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수도권 대학에 한함)
	※ 4대 과기원, 포항공대는 수도권으로 분류	
연구비	15억원 (간접비포함)	24억원 (간접비포함)
	※ 간접비는 총연구비의 10% 적용, 간접비 고시비율 10% 미만 기관은 고시비율 적용	
지원사항	핵심연구과제 및 연구소별 자율프로그램	
지원기간	9년(3+3+3)	
연구개시일	2026. 9. 1	

* 컨소시엄 : 서로 다른 대학에 소속된 KCI 등록 이공분야 연구소 3개 내외로 구성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既수혜 연구소(종료 및 9년차 연구소(2018년 선정))의 경우, 컨소시엄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既수혜 연구소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은 신청 불가)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본교, 분교가 함께 포함된 컨소시엄은 신청 불가
 ☞ (예시) 연간 15억원을 신청할 경우 연구비(간접비 포함) 및 연구기간

구분	지원 기간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					
		'26년	'27년	...	'34년	'35년	'26년	'27년	...	'33년	'34년	'35년
글로벌 (거점형)	9년 (3+3+3)	750	1,500	...	1,500	750	'26.9.1 ~ '27.2.28 (6개월)	'27.3.1 ~ '28.2.29 (12개월)	...	'33.3.1 ~ '34.2.28 (12개월)	'34.3.1 ~ '35.2.28 (12개월)	'35.3.1 ~ '35.8.31 (6개월)

II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1 신청 및 참여 자격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컨소시엄형에 해당) 및 참여연구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혹은 과제중단 처리 함.

< 대학부설연구소 >

○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대학부설연구소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내규 등을 통해 부설연구소로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대학부설연구소 명과 신청과제명이 동일하며, 대학부설연구소장이 주관(공동)연구책임자 임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KCI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①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소
- ②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육성·지원 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 ③ 연구소장 책임 하에 타 연구소와 차별화되는 전문화·특성화 발전이 가능한 연구소로서 지역 발전·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주제 또는 지역 특화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분야 핵심과제를 선정하여야 함
- ④ 연구소 기반(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진 연구소로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 기반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학문후속세대 등 우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소(거점형/컨소시엄형)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소(컨소시엄형) 공통 적용

○ 대학부설연구소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 (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접수마감일 기준)이어야 함

< 연구과제 및 연구자 구성 >

○ 연구과제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부설연구소별 1개 단위과제로 신청
- 컨소시엄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하여 신청

구분	내용	거점형	컨소시엄형
연구책임자	연구소장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전임교원)	
공동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소장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속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전임교원)	
참여연구자	자율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소속된 교원, 학생연구자 등 ※ 참여연구자(교수급) 인원 수의 80% 이상은 자대학 인원으로 구성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등에 소속된 교원, 학생연구자 등

※ 주관(공동)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개시 시점에는 전임교원에 한함

※ 해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소(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

※ 글로벌 연구자는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로 구성(25년 선정과제 포함 적용)

2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

- 대학*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대 거점형 2개, 컨소시엄형 1개로 신청 제한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분교의 경우 본교와 별도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분류
※ 대학별 유형 최대 과제 수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 대학 유형 내 신청 과제 전체 요건탈락 함

【 대학부설연구소 】

- 연구소별 거점형과 컨소시엄형(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중 1개만 신청
- 타 집단연구* 과제에 수행(참여) 중이거나, 2026년 신청이력이 있는 연구소는 신규 신청 불가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G-LAMP)의 중점테마연구소, 국가연구소(NRL 2.0)
※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내의 인프라 고도화 유형, 핵심연구지원센터 등은 신청 가능

【 연구자 】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 개인단위 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 (기본원칙)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신청) 가능(붙임 참조)
- (예외) 국가연구소(NRL 2.0) 공동연구원은 글로벌랩 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

〈교육부·과기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집단 연구	과기 정통부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국가연구소(NRL2.0)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글로벌랩, 대학기초연구소(G-LAMP)	

※ 2026년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신청이력이 있는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경우 글로벌랩 사업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타 집단연구사업 수행(신청)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확인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하는 경우는 예외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글로벌랩 컨소시엄형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 정부R&D 공통사항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이어야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됨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3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

【 연구소 전용 공간, 시설·장비, 인력, 자금 지원 】

- 글로컬랩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시설·장비 및 인력, 자금 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소의 지속 가능성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전용공간* 집적화 권장
 - * (예시) 주관연구책임자(연구소장)실, 참여교수 연구실, 연구기기실, 세미나실 등 전용공간
 - ※ 총 연구개발기간 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글로컬랩에 제공한 연구 전용공간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금지(연구비에서 전용공간·시설 사용료 등 사용 불가)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글로컬랩에 제공한 연구 전용공간 등에 대한 초기 시설 투자 비용 사용금지(연구비에서 전용공간·시설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구입 등 사용 불가)
 - ※ 총 연구개발기간 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글로컬랩에 제공한 연구 전용공간 등에 대한 지원 축소 불가
 - 정부출연연구비 외 기타 자금 등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별도 관리
 - ※ 글로컬랩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지속성·자율성 보장 및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재직을 보장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 변경 시 허용 사유 이외는 중단 원칙 적용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변경여부 검토)

【 연구책임자 변경 허용 사유 】

구분	세부내용
신분변동 (공직임용)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 공직, 정부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상근 관리자 직책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천재지변, 사망, 질병, 육아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 입원, 질병 휴직, 출산·육아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으로 연구 수행이 불가한 경우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방법 및 절차

▶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접속/로그인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용에 따라 기존 한국연구자정보(KRI) 내 등록된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https://nri.iris.go.kr>)으로 이관 필수(별첨 매뉴얼 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매뉴얼 참고)

□ 접수 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가 '제출회수' 버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내에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신청절차

구 분	신청 절차	세부내용
-----	-------	------

사전절차 (연구책임자, 주관연구 개발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I(https://www.kci.go.kr) 홈페이지에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정보마당에서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 KCI에 등록된 관련 정보 최신 업데이트 및 평가 전 공개 제한 해제 요망
	대학과의 사전협의 및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소속대학)과의 사전 협의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로 협의한 후에 신청 가능 - 지원 사항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 (연구 전용공간 및 운영인력 지원 등)
	NRI가입 / IRIS 기관등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 NRI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등록정보갱신 - 기본정보 : 인적정보(연락처 등), 소속기관, 직급, 학과 등 - 학위정보 : 학위수여 대학, 세부전공, 지도교수 등 - 연구실적 : 논문, 특허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제출 서류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 : 양식에 따라 작성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참여연구자 전체에 대하여 작성

신청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IR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화면 상의 신청 정보 입력/확인 ▶ 연구계획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 접수마감 시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승인 (주관연구 개발기관)	검토·승인 (I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신청 가능 여부(신청자격 등) 확인 - 자격조건 만족여부, 타 사업 참여, 참여제한, 기타 연구윤리 위반 등 ▶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사항·연구비 확인 ▶ 업로드 파일 확인 : 신청양식 준수 여부, 파일 이상여부 등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처리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p>※ 연구계획서 등 관련 증빙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상되거나 암호화되어 시스템에서 파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 서류 미제출로 판단하여 요건 탈락 등 접수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p>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주요일정(안) : 선정평가('26.5 ~ 8)→선정결과 공고('26.8.)→연구개시('26.9.1.)

구분	기간
① 연구자 신청기간	2026.04.07.(화) 09:00 ~ 2026.04.14.(화) 14:00:00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04.07.(화) 09:00 ~ 2026.04.14.(화) 16:00:00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제출 완료” 처리 하여야 함.
 -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 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
 - 따라서, 신청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바람(주관연구개발기관 문의)
 - ▶ 신청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접수마감일 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는 없음
- ※ 신청과제명은 대학부설연구소 명과 동일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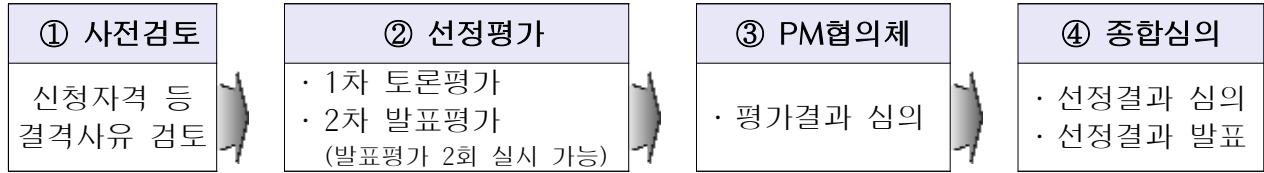
□ 제출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연구개발계획서 (거점형 25페이지, 컨소시엄형 30페이지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 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표지/목차/참고문헌은 분량에서 제외(작성 분량에 대한 내용은 연구계획서 양식 내 안내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인사권자(총장) 명의 날인 (산학협력단장 날인은 인정하지 않음)
③ 주관(공동)기관 지원 약속서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연구윤리·청 렴 및 보안 서약서 포함)	- 모든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작성 (스캔 업로드, 자필서명 필수, 서명 이미지 불가, 원본 보관 필수)
⑤ 증빙자료	- 연구계획서 내용과 일치하여 관련 증빙작성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 요건 탈락 등 접수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IV 선정절차 및 평가사항

1 평가 절차 및 방법



※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토론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2 평가 항목 및 내용

□ 거점형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운영 실적 및 기반	연구소 운영 실적 및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연구소 특성화, 전문화 등 운영 실적 ○ 최근 3년 이내 연구소 운영 성과(연구, 인력양성 등) ○ 현재 연구소 인력, 공간, 시설, 장비 등 현황 	15
연구소 운영 계획	연구소 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연구소 발전 비전 및 육성 방안(대학의 중장기 발전방향과의 연계성 등 포함)의 우수성 ○ 대학연구소의 지역거점으로서 발전방안의 적절성 ○ 연구소의 자생력 확보 및 대학의 중장기 재정투자의 실현가능성 ○ 연구소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 등)의 적정성 	15
	연구과제 수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 연구 주제, 내용, 방법의 혁신성 및 적합성(지역발전 선도 또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 핵심과제 구성 및 연구인력 참여의 적절성(과제 간 연계, 융합연구 등) ○ 자율과제 구성·운영의 타당성 및 우수성 ○ 연구성과의 파급력 및 활용 방안의 구체성 ○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의 실현가능성 	25
	연구인력 구성 및 지원 기반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장의 조직관리, 리더십, 네트워크 및 학문적 역량 ○ 대학의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연구 인력의 연구 실적·역량 ○ 연구·행정 지원 인력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연구소의 공간·시설·장비 확충의 우수성 ○ 연구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25
	학문후속 세대 양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후속세대 연구참여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학문후속세대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의 적절성 ○ 학문후속세대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우수성 	20

□ 컨소시엄형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운영 실적 및 기반	연구소 운영 실적 및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연구소 특성화, 전문화 등 운영 실적 ○ 최근 3년 이내 연구소 운영 성과(연구, 인력양성 등) ○ 현재 연구소 인력, 공간, 시설, 장비 등 현황 	15
연구소 운영 계획	연구소 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연구소 발전 비전 및 육성 방안(대학의 중장기 발전방향과의 연계성 등 포함)의 우수성 ○ 대학연구소의 지역거점으로서 발전방안의 적절성 ○ 연구소의 자생력 확보 및 대학의 중장기 재정투자의 실현 가능성 ○ 연구소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 등)의 적정성 	15
	연구과제 수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 연구 주제, 내용, 방법의 혁신성 및 적합성(지역발전 선도 또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 핵심과제 구성 및 연구인력 참여의 적절성(과제 간 연계, 융합연구 등) ○ 자율과제 구성·운영의 타당성 및 우수성 ○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연계성 ※ 연구진 구성, 연구비 배분, 핵심과제 간의 연계성 확보 등 컨소시엄 운영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실질적 권한 보유 등 ○ 연구성과의 파급력 및 활용 방안의 구체성 ○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의 실현가능성 	25
	연구인력 구성 및 지원 기반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장의 조직관리, 리더십, 네트워크 및 학문적 역량 ○ 대학의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연구 인력의 연구 실적·역량 ○ 연구·행정 지원 인력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연구소의 공간·시설·장비 확충의 우수성 ○ 연구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25
	학문후속 세대 양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후속세대 연구참여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학문후속세대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의 적절성 ○ 학문후속세대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우수성 	20

※ 컨소시엄형 연구소 운영 실적 및 운영 계획은 주관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참여연구소의 현황 및 계획도 적절히 기술 필요

[참고]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 사항 예시

※ 소속대학의 지원 사항은 평가항목 중 ‘연구인력 구성 및 지원 기반 확보 계획’ 과 관련하여 평가 시 고려가능

1. 연구·행정 지원 인력 확보계획 : 글로컬랩 연구소에 대한 운영인력(전임행정요원 등) 지원
2. 연구 전용공간·시설·장비 확충계획 : 연구 공간, 사무실, 실험실 등 전용 공간 지원
- 연구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소 사무실, 연구참여자 연구 공간 등 연구소 전용 공간 지원
3. 기타 : 주관(공동)연구책임자(소장)의 연구소 운영 전념을 위한 수업시수 조정 권장

※ 신청용 연구계획서에 제시하는 ‘연구인력 구성 및 지원기반 확보계획’ 은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연구 개시 후 과제 수행 시에 반드시 제시한 지원 사항을 이행해야 하므로, 연구소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 하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작성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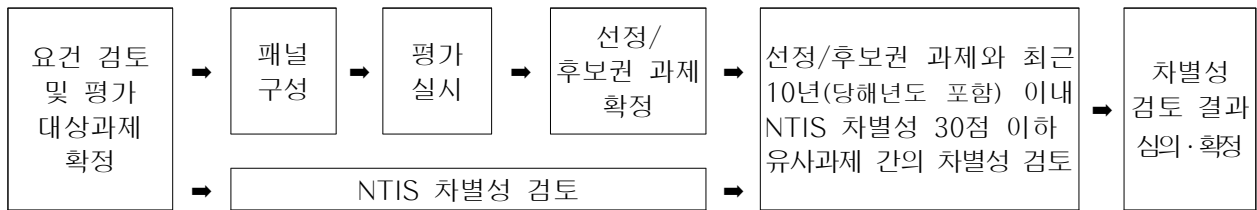
※ 총 연구개발기간 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글로컬랩에 제공한 연구 전용공간·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 축소 불가

3 차별성 검토

□ NTIS 차별성 검토

-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시)전문가 활용한 차별성 검토
 -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초 신규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과의 차별성 검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 NTIS 차별성 검토 절차 준용

※ 차별성 검토 방법 및 세부 기준은 향후 AI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 계속 및 종료 등 사업관리

1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

- **관련규정**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름
 - 매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평가방법 등은 변경 가능

□ 연차점검 및 컨설팅

- **(연차점검)** 성과포럼·워크숍 등과 연계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소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우수성과 발굴·확산 추진
 - ※ 연차점검은 기본적으로 연구소(컨소시엄)별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며, 재정 사용의 투명성 등 행정적 사항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 등 실시 가능
- **(컨설팅)** 선정평가 수정·보완 권고 사항, 선정 연구소당 컨설팅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컨설팅 실시 및 관련 내용을 자체평가 내 포함
 - ※ 컨설팅 위원은 R&D, 지역발전, 연구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 예정

□ 단계·최종평가

- **(단계평가)** 3차년도, 6차년도 종료 전에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추진 상황 및 성과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 ※ 단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단계 진입(계속 지원 여부) 및 연구비 차등 지급 가능
- **(최종평가)** 연구소(컨소시엄)의 전체 실적 및 지속가능성 전반 평가 실시
 - ※ 단계·최종평가 관련 사항은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협약해약(지원 중단) 사항

- 주관(공동)연구책임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기존 연구책임자를 대신할 수 없다고 평가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 신청요강 9페이지의 **【연구책임자 변경 허용 사유】** 참고

VI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 ▶ 국문표기 : 본 연구성과는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과제 번호 : IRIS 시스템에서 확인)
- ▶ 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2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및 해외 체류 시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하며, 사후 신청 시 승인 불가하며, 과제 중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연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혹은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 신청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 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에 확인
 -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http://irb.or.kr>)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R&D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 지식재산권(특허 등)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기간
 -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6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인체자원연구지원센터(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물은행에 기탁하여야 함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의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관련 규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에서 관련 자료 참고

11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 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12 연구 윤리 관련 사항

-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하는 경우 ‘부실 학회·학술지 체크리스트’를 통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점검 후 추진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불가피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는 불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 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연구과제에서 즉시 배제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연구책임자 교체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
 -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과제에 대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과제 중단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조치

※ 연구수행 전 협약 체결 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연구과제를 중단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협약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게 됨’을 명시

13 적용 법령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항에 따라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적용함

타 과제 수행 연구자의 현재 참여 자격			글로벌 신규신청 및 동시수행 가능 여부	
			주관(공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과기부 집단 연구 사업	국가연구소 (NRL2.0)	연구책임자	X	○
		참여(공동)연구원	○	○
		참여연구자	○	○
	선도 연구센터	연구책임자	X	○
		참여(공동)연구원	X	○
		참여연구자	○	○
	기초연구실	연구책임자	X	○
		참여(공동)연구원	X	○
		참여연구자	○	○
개인기초	리더연구	연구책임자	X	○
교육부 집단 연구 사업	대학 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	X	○
		참여(공동)연구원	X	○
		핵심연구인력	X	○
	대학 기초연구소 (G-LAMP)	사업단장	X	○

※ 개별사업의 참여자격 및 제한 사항은 소관부서로 별도 문의

1 글로컬랩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사항>

1. 글로컬랩사업은 3책 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 ➔ 3책 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3책 5공) 임을 뜻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글로컬랩의 모든 과제는 3책 5공 대상과제에 포함됩니다.

2. 1인 1과제 수행(신청) 제한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 집단단위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글로컬랩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 1인 1과제 수행(신청) 제한이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소관 집단단위 기초연구사업 과제를 1개만 수행(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교육부·과기정통부 소관 집단단위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신청이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글로컬랩 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기간이 신청하고자 하는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6.9.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 2026년부터 글로컬랩 사업은 참여인력에 공동연구원을 포함하지 않고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로만 구성합니다. 2025년 선정 과제의 참여(공동)연구원은 참여연구자로 분류됩니다. 집단단위 기초연구사업 1인 1과제 수행(신청) 제한은 글로컬랩 내 참여인력 중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글로컬랩 컨소시엄형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해당 참여 제한 조치가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책임자는 지원자격 상실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캠퍼스가 있는 대학의 경우 본교와 캠퍼스가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분교는 분교가 실제로 위치한 지역, 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분교로 인정하는 아래의 학교는 본교와 별도로 동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교 인정대학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충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경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안산)	

* 분교 인정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은 본교를 기준으로 함.

5. 대학별 신청가능한 과제는 몇 개까지입니까?

- ➔ A대학은 거점형 2개, 컨소시엄형(주관) 1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번과 같이 분교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본교, 분교 각각 거점형 2개, 컨소시엄형(주관) 1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대학별 유형 최대 과제 수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 대학 유형 내 신청 과제 전체 요건 탈락 합니다.

예시) A대학이 거점형 3개, 컨소시엄형(주관) 1개 지원 시, 거점형 신청 가능 과제 수 초과로 거점형 3개 과제 전체 요건 탈락

※ 단, 컨소시엄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수도권 소재 ‘지역대학’으로 限하며, 수도권 대학이 컨소시엄형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시 요건 탈락 함

6.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접수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 본교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며, 관련 유형을 잘못 신청할 경우 요건 탈락됩니다.

※ 4대 과기원 및 포항공대는 수도권으로 분류하며, 분교 인정대학은 본교와 별도로 분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7. 연구소는 몇 개 과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 B연구소가 신청할 수 있는 과제는 1개입니다. B연구소가 컨소시엄형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거점형, 다른 컨소시엄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구분야 및 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8. 이공학분야(이공계 과학기술 소 분야)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

- ➔ 신규과제 신청 시 ‘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RB)’ 를 통해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 분류표*’ 에서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확인하고,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9. 기존에 수행한 연구주제 및 타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한 연구주제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까? 타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기존에 수행한 연구와 100% 동일한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복성이 우려될 경우 연구자가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하여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제 유사도가 70%가 넘는 유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학문단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차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타 기초연구사업에 신규로 신청한 연구와 100% 동일한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과제는 타 기초연구사업 신청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된 과제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 참여연구자로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기관인 경우에도 학생연구자의 연구 수행 기여도 인정 및 보상을 위해 과제에 참여연구자 등록 필요)

<연구개발비 계상>

11. IRIS 시스템 내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입력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 컨소시엄형의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전체 연구비의 20%를 주관연구소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12.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합니까?

- ➔ 간접비는 총연구비의 10%를 계상하며, 간접비 고시비율 10% 미만 기관은 고시비율로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 (‘26년~)간접비 적용 비율은 계속과제 포함 적용

글로벌랩	1단계			2단계			3단계				
	1차년도 (‘26년)	2차년도 (‘27년)	3차년도 (‘28년)	1차년도 (‘29년)	2차년도 (‘30년)	3차년도 (‘31년)	1차년도 (‘32년)	2차년도 (‘33년)	3차년도 (‘34년)	4차년도 (‘35년)	
연구기간	‘26.9.1~ ‘27.2.28 (6개월)	‘27.3.1~ ‘28.2.29 (12개월)	‘28.3.1~ ‘29.2.28 (12개월)	‘29.3.1~ ‘30.2.28 (12개월)	‘30.3.1~ ‘31.2.28 (12개월)	‘31.3.1~ ‘32.2.29 (12개월)	‘32.3.1~ ‘33.2.28 (12개월)	‘33.3.1~ ‘34.2.28 (12개월)	‘34.3.1~ ‘35.2.28 (12개월)	‘35.3.1~ ‘35.8.31 (6개월)	
거점형	연구비	7.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7.5억원
	간접비	0.7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0.75억원
컨소 시엄형	연구비	12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12억원
	간접비	1.2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2.4억원	1.2억원

13. 연구지원인력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 대학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할 수 없습니다.

14.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 연구지원인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수당 계상·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연구과제에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과제수행 관련>

15. 과제 수행 중 6개월 이상 국내 외 파견연구 신청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나요?

- ➔ 주관(공동)연구책임자의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구계획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후 신청 시 승인 불가하며, 과제 중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과제 수행 중 6개월 미만의 국내 외 파견 승인은 연구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 승인으로 진행합니다.

<과제접수 유의사항>

17. 접수기간(연구자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 ➔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미승인 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18.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한글 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IRIS로 접수 시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이 2GB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 ② 또한 접수 마감 이후, 잘못 등록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계획서 등 관련 증빙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상되거나 암호화되어 시스템에서 파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 서류 미제출로 판단하여 요건 탈락 등 접수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2 IRIS 관련 사항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전환 동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가 필수 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은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정보 전환 → ③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관련 문의처 ☎1877-2041
 - ※ 실명인증 불가 연구자(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해외체류 내국인)는 IRIS 회원가입 불가
 - ※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진행하는 연구자번호 발급·조회·수정 서비스는 2021.8.22.부로 종료

3.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IRIS 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책임자의 NRI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대학'으로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과제신청을 진행·완료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괄담당자는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에 기관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수마감 기간이 임박하여 기관정보를 '대학'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 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 한 명의 NRI 소속기관은 다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NRI 소속기관이 동일한 인력만 해당 기관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관정보를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의 대표자(예: A대학 홍OO, A대학산학협력단 김OO)와 2명의 기관총괄담당자(예: A대학 이OO, A대학산학협력단 박OO)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관총괄담당자가 아닌 기관담당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가 일치하는 담당자에게만 기관담당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승인권한 부분은 다음 FAQ 참고

5.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NRI 소속기관 정보가 'A대학'이 아닌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인력은 'A대학 산학협력단'의 기관담당자 권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IS에서 별도 조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A대학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는 'A대학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A대학'의 과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 반대로 'A대학' 기관담당자에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A대학'으로 신청한 과제의 접수 및 협약 등에 필요한 기관 승인권한만 부여되며, 'A대학 산학협력단' 과제에 대해서는 승인권한이 없습니다.

6.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므로,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